

보도시점 2026. 8. 3.(월) 12:00 / 배포 2026. 8. 3.(월) 08:30
< 8. 4.(화) 조간 >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본부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주)별빛강물(이하 ‘별빛강물’)이 ①소속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②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 포함)과 과징금(7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된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별빛강물은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사기죄를 범하여 2021. 11. 23.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2. 1. 7.부터 2024. 6. 26.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빛강물 임원이 사기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 별빛강물은 2021. 7. 16.부터 2024. 6. 26.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주었으며, 그중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등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빛강물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가맹본부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책임자	팀 장	김세겸	(02-2110-6167)
		담당자	사무관	한성호	(02-2110-6157)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가맹본부명 : (주)별빛강물

사업자등록일	가맹사업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업종
2018. 6. 14.	바틀샵	2020. 12월	와인·커피 전문 소매점

* 출처 : 별빛강물 정보공개서

☐ 매출액 등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개)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가맹점/ 직영점
2022	2,010,158	2,684,296	△674,137	2,890,245	364,132	362,590	62/4
2023	2,464,721	2,154,529	310,192	2,116,725	527,617	514,329	47/6
2024	2,754,155	2,262,693	491,462	824,204	△177,966	181,270	- / -

* 출처 : 별빛강물 정보공개서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6조의4(정보공개서의 등록의 취소)

-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 ① (생략)
-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 3. (생략)
 -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① (생략)
-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 3. (생략)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 1. ~ 3. (생략)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① 가맹본부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